

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접수 세부사항

2017년 9월

1

주요 내용

- 배경 : 법정사유로 인한 긴급자금 필요한 직원에 대한 자금 여력 확대
- 대상 :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
- 신청 type : DC형/혼합형 중 한가지 선택
 - DC 형 :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
 - 혼합형 :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,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
- 관련 법규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
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,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
 -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
 -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
 -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
- 중도인출금액 : **(전환기준일) 2017.06.30** 기준 퇴직금 전액 (사외예치액+사내유보액)

1

주요 내용

· 주요 일정

- 금융기관별 중도인출 신청 접수 : 2017.09.22(금) ~ 2017.10.13(금)
- DC전환일 : 2017.10.30(월)
- DC중도인출 가능일 : 2017.11.03(금) 이후

※ 중도인출 가능일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금융기관에 일정 확인 필요

【대상 금융기관(총 26개 기관)】

- 보 험 : 교보생명, 미래에셋생명, 삼성생명, 삼성화재, 신한생명, 한화생명, IBK연금보험
- 은 행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
광주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
- 증 권 : 미래에셋대우, 삼성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,
KB증권, NH투자증권

I.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

2

중도인출 사유별 제출서류

· 공통서류 : 퇴직연금제 전환신청서(Type 선택)
중도인출신청서(금융기관별 접수 시 작성)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	증빙서류	발급처
 ·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, ·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, 임차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	·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·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·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 · 무주택서약서 ·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(주택 구입시)	-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 -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 - 가입 금융기관
 ·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	·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·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	- 병원 -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
 ·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	·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(최근 5년 이내)	법원
 ·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	· 법원파산선고문 (최근 5년 이내)	법원
 ·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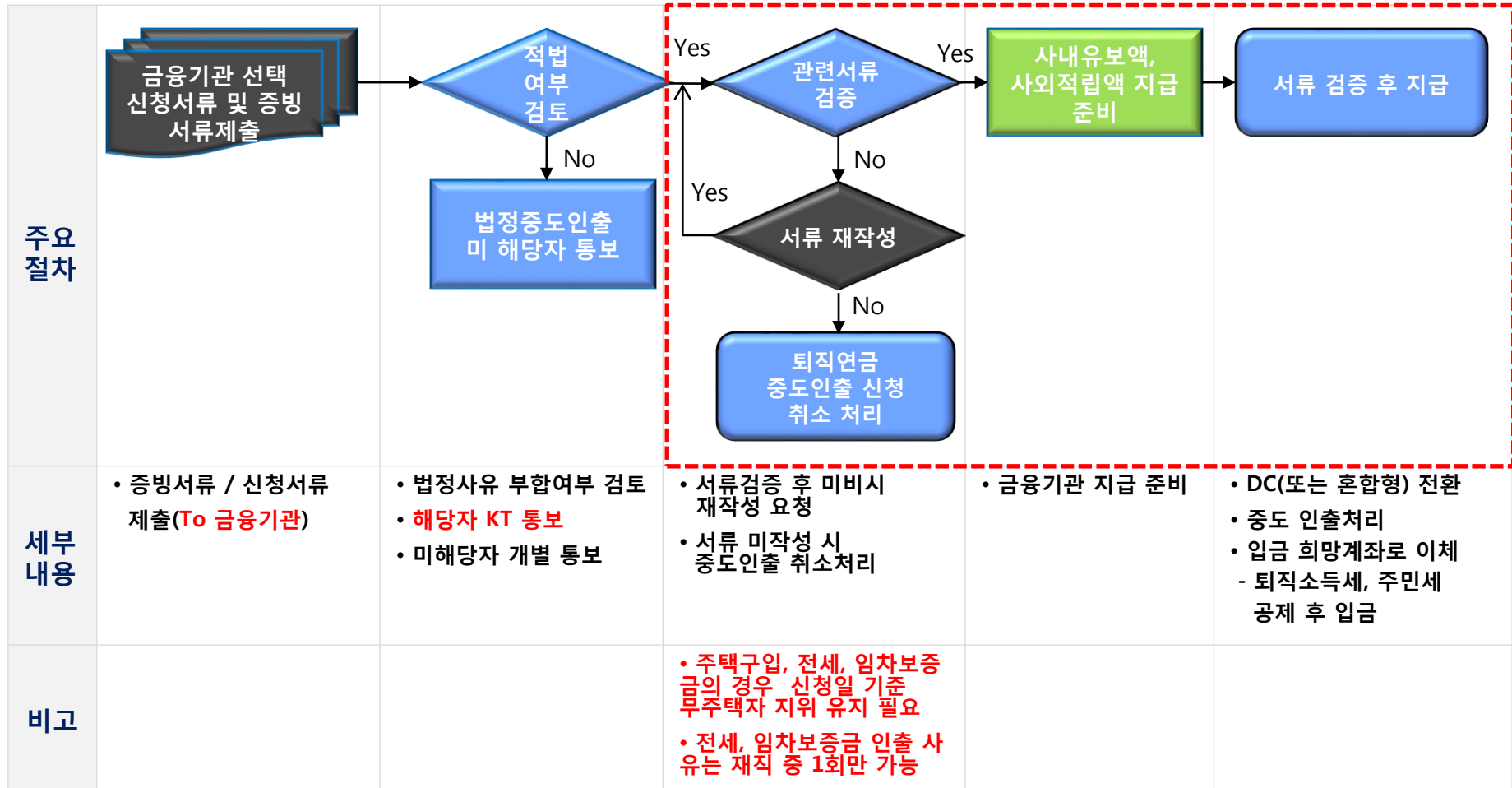
※ 주택구입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로 무주택자임이 불확실할 경우, 추가로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확인

I. 퇴직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

3

업무처리 프로세스

구분			
	신청자	금융기관	보수팀



주의사항 및 향후 계획

· 주의사항
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,
반드시 중도인출 인출 시점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.
- 전세금, 임차보증금 지급일 이후 신청은 1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급 영수증 제출하여야 함
- 주민등록등본은 현주소 전입일이 2개월 이내일 경우엔 주민등록초본 추가 하여야 함
-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,
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**반드시 '향후 6개월 이상' 이라는 문구가 포함**되어야함
(고용노동부 행정지침)
- 확정급여형(DB)에서 확정기여형(DC) 및 혼합형(DC+DB)전환은 가능하나,
DC형 및 혼합형에서 DB형으로 전환 불가
- 증빙서류는 **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**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
- 혼합형(DB+DC)은 DC형 전환분만 중도인출가능 (DB형 운용분은 DC형 전환 후 중도인출 가능)

· 향후계획

- DC형 전환 접수 : 연 2회(매년 1, 7월)
- 법정중도인출 사유자 추가 신청 : 연 2회(매년 4, 10월)